

## < 정 오 표 (1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인덱스200증권투자회사[주식-파생형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동일종목 투자한도 변경 등)
- 주식 투자한도 보완(주식에 60%이상 →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%이상)
-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투자회사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채권평가회사 추가(에프앤자산평가)
- '기업공시서식 기준'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(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)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52조(투자한도)	1. 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<u>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u>	1.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
제53조(자산운용 및 투자제한)	2.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.. (중략) ..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~다. (생략) <신설>	2.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.. (중략) ..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~다. (현행과 동일) <u>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 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회사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
제65조(해산)	1~6. (생략) <신설>	1~6. (현행과 동일) 7. <u>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3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0. <u>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 11. <u>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</u>

		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주식: 60% 이상(다만, 국내주식 60% 이상)	가. 투자대상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: 60% 이상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가~다. (생략) <신설>	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가~다. (현행과 동일) 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- (생략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 <u>일반법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- (현행과 동일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신설>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u>에프앤자산평가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.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	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합니다. 이 경우 청산인은 해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 관련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

	- <신설>	- <u>주주(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합니다)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3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신설>	나. 수시공시 - <u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0. <u>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 11. <u>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<u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2부. 2. 과세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 <u>개인 15.4%, 법인 14.0%</u> )을 부담합니다.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 <u>개인·법인 15.4%</u> )을 부담합니다.
제3부. 요약재무정보	-	<u>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
## < 정 오 표 (2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Daily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동일 종목 투자 한도 변경 등)
- 주식 투자한도 보완(주식에 60%이상 →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%이상)
-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채권평가회사 추가(에프앤자산평가)
- '기업공시서식 기준'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(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)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8조(투자한도)	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 <u>다만,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</u>	1.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한다.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.. (중략) ..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~다. (생략) <신설>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.. (중략) ..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~다. (현행과 동일) <u>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 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-4. (생략) <신설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-4. (현행과 동일) <u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편

		<p>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11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주식: 60% 이상(다만, 국내주식 60% 이상)	가. 투자대상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: 60% 이상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가~다. (생략) <신설>	<p>나.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가~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</p> <p>- (생략)</p> <p>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4%</u>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</p>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<u>일반법인 15.4%</u>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(현행과 동일)</p> <p>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</u>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</p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</p>	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 <p>라.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

제4부.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신설>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u>에프앤자산평가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 - 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</u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신설>	나. 수시공시 - <u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0.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</u> 11. <u>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
제1부. 2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이 투자신탁은 <u>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, 파생상품에 투자신탁재산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u> 으로서, 비교지수인 한국종합	이 투자신탁은 <u>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상(파생상품에 투자신탁재산의 10%를 초과)투자할 수 있는 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</u> 으로서,

	주가지수200(KOSPI200)의 변동률에 근접한 성과의 달성을 위해 한국종합주가지수 200(KOSPI200)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. 다만, 추적오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SPI200 구성 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	비교지수인 한국종합주가지수200(KOSPI200)의 변동률에 근접한 성과의 달성을 위해 한국종합주가지수200(KOSPI200)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과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합니다. 다만, 추적오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KOSPI200 구성 종목 이외의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<u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2부. 2. 과세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법인 14.0%)을 부담합니다.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·법인 15.4%)을 부담합니다.
제3부. 요약재무정보	-	<u>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
## < 정 오 표 (3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동일 종목 투자 한도 변경 등)
-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채권평가회사 추가(에프앤자산평가)
- '기업공시서식 기준'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(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)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-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-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<u>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<p>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<u>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p>나. 투자제한</p> <p>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투자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2. 가~다. (생략)</p>	<p>나. 투자제한</p> <p>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투자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2. 가~다. (현행과 동일)</p>

	<신설>	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 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- (생략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 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 <u>일반법인 15.4%</u> (지방소득세 포함) - (현행과 동일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 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신설>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u>에프앤자산평가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 - 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</u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신설>	나. 수시공시 - <u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

[간이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<p>10.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11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p>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2. 과세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법인 14.0%)을 부담합니다.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·법인 15.4%)을 부담합니다.
제3부. 요약재무정보	-	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4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웰스중소형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]
- 유리피가로스마트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동일 종목 투자 한도 변경 등)
-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채권평가회사 추가(에프앤자산평가)
- '기업공시서식 기준'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(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)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.. (중략) ..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~다. (생략) <신설>	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.. (중략) .. 본다. 다만,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~다. (현행과 동일) 라. <u>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 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-4. (생략) <신설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-4. (현행과 동일) 5.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

		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<u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2. 가~다. (생략) <신설>	나. 투자제한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2. 가~다. (현행과 동일) 라. <u>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- (생략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 <u>일반법인 15.4%</u> (지방소득세 포함) - (현행과 동일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신설>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u>에프앤자산평가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 - 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신설>	나. 수시공시 -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 <u>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</u> 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0.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1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2. 과세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법인 14.0%)을 부담합니다.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·법인 15.4%)을 부담합니다.
제3부. 요약재무정보	-	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5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KOSPI200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동일 종목 투자 한도 변경 등)
- 주식 투자한도 보완(주식에 60%이상 →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에 60%이상)
-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채권평가회사 추가(에프앤자산평가)
- '기업공시서식 기준'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(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)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-4. (생략) <신설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1-4. (현행과 동일) 5.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주식: 60% 이상(다만, 국내주식 60% 이상)	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: 60% 이상
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2. 가~다. (생략) <신설>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2. 가~다. (현행과 동일) 라. <u>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 - (생략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4%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</u>	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· <u>일반법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 - (현행과 동일) 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</u>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신설>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u>에프앤자산평가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 - 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</u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신설>	나. 수시공시 - <u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

항		
---	--	--

**[간이설명서]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2.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	- 주식: 60% 이상	-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: 60% 이상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2. 과세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법인 14.0%)을 부담합니다.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·법인 15.4%)을 부담합니다.
제3부. 요약재무정보	-	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6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마음편한인덱스증권투자신탁[주식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동일 종목 투자 한도 변경 등)
- 채권평가회사 추가(에프앤자산평가)

#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2. 가~다. (생략) <신설>	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 2. 가~다. (현행과 동일) 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최근 반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규모	라.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4부.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신설>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에프앤자산평가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신설>	나. 수시공시 -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

#### [간이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6. 투자실적	-	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추이		
제3부. 요약재무정보	-	최근 반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
## < 정 오 표 (7) >

### 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MKF웰스토탈인덱스장기소득공제증권자투자신탁[주식]

### 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5.09.24

### 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동일 종목 투자 한도 변경 등)
- 세제 개편사항 반영
-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
- 채권평가회사 추가(에프앤자산평가)

### [규약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-4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-4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

### 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<u>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<p>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2. 가~다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투자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2. 가~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라.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행위</u></p>
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</u>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, <u>일반법인 14%</u></p> <p>- (생략)</p> <p>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4%</u>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</p>	<p>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- 개인 <u>일반법인 15.4%</u>(지방소득세 포함)</p> <p>- (현행과 동일)</p> <p>-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<u>15.4%</u> (소득세 14%, 지방소득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법인</p>

	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	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-	<u>최근 결산일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	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
제4부. 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신설>	라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<u>에프앤자산평가</u>
제5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생략) - <신설>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- <u>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신설>	나. 수시공시 - <u>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)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<신설>	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

### [간이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<신설>	10. <u>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,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u> 11. <u>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(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)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</u>

		며,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,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	-	-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1부. 6. 투자실적 추이	-	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제2부. 2. 과세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 15.4%, 법인 14.0%)을 부담합니다.	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, 배당 및 양도차익(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)에 대하여 소득세 등(개인·법인 15.4%)을 부담합니다.
제3부. 요약재무정보	-	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